

융합기술연구소 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 1조 (목적) 본 규정은 IT, BT 및 NT 등 신기술을 융합한 분야의 응용 연구 및 바이오 칩에 관한 산학협력, 인력양성, 장비활용 등을 통한 대학의 특성화를 실현하여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국가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함에 그 목적이 있다.

제 2조 (명칭 및 소재) 본 연구소는 호서대학교 융합기술 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 칭하며, 호서대학교(이하 “대학교”라 한다) 내에 둔다.

제 3조 (사업) 본 연구소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IT, BT 및 NT관련 융합기술 기초, 응용 연구
2. 융합 기술보급 및 고급인력 양성
3. 국책 사업 유치 지원
4. 산 • 학 • 연 협동 프로그램의 개발, 운영
5. 세미나, 학술회의 개최 등 각종 연구진흥 사업 수행
6. 기술지도, 기술이전 및 상품화 지원 등 각종 산학협력 사업 수행
7. 국내/국외 융합기술 관련 연구기관과의 협력
8. 외부기관의 위탁용역 연구
9.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 수행
10. 기타 연구소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수행

제 2 장 조 직

제 4조 (조직) 연구소에는 다음 조직을 둘 수 있다.

1. 융합기술연구부
2. 정보관리수집부
3. 인력양성부
4. 산학협력부
5. 지원사업부: 연구업무에 대한 행정관리 및 관련 업무 지원

제 5조 (임원) 연구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.

1. 소장 : 1명
2. 부장 : 4-5명

제 6조 (임원의 임무, 임명, 임기) ①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여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무를 관장한다. 연구소 참여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 부장은 연구소와 관련된 세부업무 및 연구와 제반 활동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. 소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 7조 (연구원) ① 연구센터에 연구원, 전임연구교수, 전임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.(개정 2015.09.01.)

② 연구센터 내 연구원 임용은 대학의 ‘연구원 임용규정’을 준용한다. 단, 연구보조원은 학사이상의 학위소지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.(항번호 변경, 개정 2015.09.01)

③ 연구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.(항번호 변경, 개정 2015.09.01)

제 3 장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

- 제 8조 (운영위원회)**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기본 계획수립, 사업방향의 설정, 예·결산 및 사업계획, 기타 중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-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운영위원장은 소장이 맡고, 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 기타 위원은 소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(개정 2015.09.01)
-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4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되며 위원 중 간사를 둔다.
- ④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⑤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서명날인을 받아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.
- ⑥ 운영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기본 운용계획의 수립
 2. 규정의 제정 및 개폐
 3. 예산 및 결산
 4. 연구과제 선정 및 평가
 5.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

- 제 9조 (자문위원회)** ① 연구소의 주요 정책사항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② 자문위원은 관련 학문분야의 권위 있는 국내외 인사들로 구성하며 소장이 위촉한다.
- ③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4 장 운영 및 재정

- 제10조 (재정)** ① 연구소의 재정은 각종 지원금, 국책 연구비, 연구용역비, 사업수익금, 기타 기부금 및 창조금 등으로 충당한다.
- ②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대학교 회계연도에 준한다.
- 제11조 (보고)** 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때 보고는 연구소 관리부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. (신설 2015.09.01)
1. 연구소 운영실적보고서 - 다음해 3월말까지
(해당 학년도 연구비 수혜상황 및 연구실적 총괄표 포함)
 2. 매 회계연도 결산서 - 다음해 3월말까지
 3. 신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-1월말까지
 4. 기타 연구소와 관련된 자료

제 5 장 폐 소

- 제12조 (폐소)** ① 본 연구소가 폐소할 때에는 잔여 재산을 본교에 귀속시킨다. (신설 2015.09.01)

제 6 장 보 칙

- 제13조 (준용)** 연구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대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 (신설 2015.09.01)

제14조 (운영세칙)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.(신설 2015.09.01)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시행세칙) 시행세칙은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